

WTO체제 출범이후 '무관세 시대' 로

관세는 국가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법률에 의하여 국가재정의 수입 또는 국내산업의 보호를 목적으로 수입물품에 대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다. 관세의 전제가 되는 관세선(custom line)은 관세에 관한 법률규제가 이루어지는 경계로서, 정치적 경계인 국경선(national frontier)과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정치적으로는 자국의 영역이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타국의 영역과 동일하게 다루어지는 자유무역지역, 그와 반대로 정치적으로는 타국의 영역일지라도 관세제도상으로는 자국의 영역과 다른없는 보세구역이나 관세동맹국 등이 있기 때문이다.

관세율은 관세의 세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과세 표준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율이다. 이 관세율은 '과세표준×세율=세액'으로 결정되며 조약 등 특정한 규정이 없는 한, 관세법의 별표인 세율표에 정해진 세율에 의하여 결정된다.

관세율에 대해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제조약으로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이 있는데, 이에 의해서 협정세율이 정해지고 있다. 이 세율은 한국과 GATT 관계에 있는 국가 또는 통상항해조약 등 관세상의 최혜국 조항을 포함한 조약을 맺고 있는 국가로부터 수입되는 화물에 대하여 최저세율을 적용하고 있는 국가 또는 무역협정 등의 관계상 특별히 편익을 제공할 필요가 있는 국가의 목적물품에 대해서는 편익관세로 협정세율과 같은 세율을 적용하게 된다.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관세를 채택, 자국의 산업을 보호하던 개발도상국들도 세계자유무역시대를 선포한 WTO의 출범(1995년)이후 관세율을 지속 낮춰, 무관세로 향하는 추세이다.

● H.S코드 및 관세적용 순서

수출입 품목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가는 수출입 과정에서 취할 수 있는 개별품목의

수출입관련 제반 업무에 관한 종합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여기에서 수출입 품목은 대외무역법에 근거한 수출입공고와 개별법에서 공고하는 통합기준에 따른다.

이에 국가는 물품의 수출, 수입 가능 여부는 물론, 그 품목과 관련한 기타 다른 조건이나 제약 등을 수출입공고와 통합공고를 통해 고시하고 있다.

그런데 엄청나게 많은 품목을 일일이 확인하고 분류하는데는 어려움이 있기에 신국제통일상품분류체계, 즉 HS(harmonized commodity description and coding system) 상품분류를 통해 각 품목을 분류하고 있다.

HS상품분류체계는 현재 96 Section(2단위), 1211 Heading(4단위), 5019 Basic(6단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단위까지는 세계공통이나 10단위는 국가별로 여건에 따라 조

〈표1〉

순위	세 율 종 류	유 의 사 항
1	덤핑방지관세, 상계관세, 보복관세 긴급관세,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	
2	국제협력관세, 편익관세	(3, 4, 5, 6보다 낮은 경우 적용) 다만, WTO "나" 방목협정 "다"는 5, 6보다 고세율임에도 편익관세 규정(관세법 시행령)에 의거 우선적용
3	조정관세, 할당관세, 계절관세	할당관세는 일반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 적용
4	일반특혜관세	
5	잠정세율	
6	기본세율	



정하여 사용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1월1일부터 이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는데 6자리 이후 세분류는 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에 따라 10자리까지 분류하고 있다.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관세율은 크게 기본, 잠정, 탄력, 양허 세율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를 다시 세분하면 17종의 과세율로 분류다. 모든 수입물품에는 이들 세율 중 반드시 하나의 세율만 적용되며 이를 위해 관세법 제50조에 다음과 같이 세율 적용순위를 정하여 운용토록 하고 있다. <표1 참조>

관세율은 신품, 중고품 구분 없이 모든 국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다만 덤핑이나 양허관세처럼 해당 세율 적용국가(업체)를 특별히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또 같은 순서끼리 경합시에는 우선적으로 낮은 세율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 각 국별 인쇄물 수입관세

각 국 관세율표의 * 품목은 H.S 코드 4분류상에는 같은 범위에 속하지만 10분류로 세분화 할 경우에는 서로 다른 관세율을 적용 받는 제품들이다.

특히 4분류상에서는 기타인쇄물에 속하지만 10분류상에는 무역 광고물·상업카탈로그로 표시되는 품목들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모든 나라에서 무관세를 적용 받았다. 이는 각 나라

사이의 교역 촉진 노력에 따른 결과로 분석된다.

한국의 인쇄물 관세율은 주요 수출입국에 비해 다소 높은 편이다. 이에 교역되고 있는 거의 모든 품목이 관세인하 압박을 받고 있는 것처럼 인쇄물의 관세율도 머지

품 목	관세율(%)	적용관세	적용국가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기본	전체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0	기본	전체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0	기본	전체
약보	0	기본	전체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0	기본	전체
설계도와 도안	0	기본	전체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0	기본	전체
전시물	8	기본	전체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8	기본	전체
캘린더	8	기본	전체
*무역 광고물, 상업카탈로그	0	기본	전체
*기타인쇄물	8/3	기본/WTO	전체

않아 하향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국내 기타인쇄물의 기본관세율은 8%인데, WTO 관세율은 3%이다. 이 경우 관세율 적용법칙에 따라 적용순위가 높은 WTO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미국의 관세제도는 상당히 복잡한 편이다. 종량제와 증가제를 병행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제품분류에 따라 각기 다른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신문, 잡지 등의 정기간행물에 대한 관세율은 0%

품 목	관세율(%)	적용관세	적용국가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기본	전체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0~0.2	기본	전체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0	기본	전체
약보	0	기본	전체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0~0.5	기본	전체
설계도와 도안	0	기본	전체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0	기본	전체
*유리류 전사물	0.3cents/kg+0.4%	기본	전체
*기타 전사물	1.5cents/kg	기본	전체
인쇄된 엽서 및 인쇄카드	0.4~0.5	기본	전체
캘린더	0~0.3	기본	전체
*무역 광고물, 상업카탈로그	0	기본	전체
*기타인쇄물	0~0.5	기본	전체

이나 그라비아 공정에 의해 인쇄된 신문 부록은 0.2%의 관세율을 책정하고 있다. 지구의의 관세율은 0.5%이지만 기타 책 형태의 지도, 해도 및 이와 유사한 차트 등은 무관세이다.

특히 전사 인쇄물의 경우에는 관세율이 매우 다양하게 적용된다. 유리류 전사인쇄물은 0.3cents/kg+0.4%의 기준에 따라 종량제와 증가제가 병행, 적용된다. 반면에 기타 전사인쇄물의 관세율은 종량제 기준, 1.5cents/kg이다. 인쇄된 엽서의 관세율은 0.4%이며 기타 인쇄카드는 0.5%이다. 캘린더의 경우는 용지가 0.51mm미만 두께일 경우 무관세이다. 그러나 용지가 0.51mm이상의 두께일 때는 종량제 0.4cents/kg 기준이 적용된다. 또 기타 형태의 캘린더는 관세율이 0.3%이다.

기타인쇄물도 인쇄물의 무게 및 특성에 따라 각각 무관세, 1.3cents/kg, 0.3%, 0.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일본의 인쇄물 관련 기본 관세율은 거의가 0%이다. 전사물,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및 캘린더 등의 기본관세율이 0%임에도 불구하고 WTO관세율이 0.4%이지만 이 기준도 올해까지만 적용되고 2004년 1월1일부터는 모

〈일본〉

품 목	관세율(%)	적용관세	적용국가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0/0	기본/WTO	전체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0/0	기본/WTO	전체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0/0	기본/WTO	전체
약보	0/0	기본/WTO	전체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0/0	기본/WTO	전체
설계도와 도안	0/0	기본/WTO	전체
우표, 수입인지, 기타 유가증권	0/0	기본/WTO	전체
전사물	0/0.4	기본/WTO	전체
인쇄된 엽서, 인쇄카드	0/0.4	기본/WTO	전체
캘린더	0/0.4	기본/WTO	전체
*무역 광고물, 상업카탈로그	0/0	기본/WTO	전체
*기타인쇄물	0/0	기본/WTO	전체

〈중국〉

품 목	관세율(%)	부가가치세	적용기준
인쇄서적, 소책자, 리플렛 이와 유사한 인쇄물	0	13	최혜국
신문, 잡지 및 정기간행물	0	13	최혜국
아동용의 그림책과 습화책	0	13	최혜국
약보	0	13	최혜국
지도, 해도, 이와 유사한 차트	0	17	최혜국
설계도와 도안	0	17	최혜국
우표	7.5	17	최혜국
지폐	7.5	17	최혜국
기타 유가증권류	7.5	17	최혜국
전사물	7.5	17	최혜국
인쇄된 엽서	7.5	17	최혜국
기타 엽서류	7.5	17	최혜국
캘린더	7.5	17	최혜국
*무역 광고물, 상업카탈로그	0	17	최혜국
*기타인쇄물	7.5	17	최혜국

두 무관세로 전환된다.

중국은 아직까지 비교적 많은 제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도 WTO 체제 출범 이후 자유무역 기류에 따라 관세율을 점차 인하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까지 14%의 높은 관세를 부과하던 전사물, 캘린더 등의 인쇄물도 올해에는 모두 7.5%로 인하였다. 다만 부가가치세율을 아직까지도 상대적으로 높은 13%, 17%를 적용하고 있다.

〈조갑준 기자〉